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88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김현정 · 박 정 · 이수진
강준현 · 황명선 · 차지호
김남근 · 송옥주 · 박홍배
복기왕 · 최혁진 · 박정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지방자치단체의 수당)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당의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6조의5(지방자치단체의 수당)</u> ① <u>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u>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u> ③ <u>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당의 지급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u>